

1. 개정이유

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현행 「수산업법」 제8조에 따른 정치망 어업을 포함되도록 「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」이 개정되어, 하위법령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감척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 포함(제3조, 제5조~제8조)

- 시·도지사에게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, 어선·어구 감척 신청, 매입지원금·폐업지원금·경영개선지원금의 지급신청, 이의신청 등을 하는 업종에 정치망어업 추가

나. 법령용어 정비(제3조, 제5조~제11조)

- 어려운 한자어, 일본어 투, 본딤말 등을 개정하고, 선박국적증서 등 확인 서류의 근거 법률의 인용 조문을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, “연안어업 및 구획어업”을 “연안어업·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”를 “산출 명세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해야”로 한다.
제5조제1항 중 “연안어업 및 구획어업”을 “연안어업·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해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안어업 및 구획어업”을 “연안어업·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선박국적증서”를 “「어선법」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, “첨부하도록 하여야”를 “첨부하게 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안어업 및 구획어업”을 “연안어업·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확인하여야”를

“확인해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안어업 및 구획어업”을 “연안어업 ·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등에 대하여”를 “등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“연안어업 및 구획어업”을 “연안어업 ·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연안어업 및 구획어업”을 “연안어업 ·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경쟁입찰에 의하여”를 “경쟁입찰로”로, “공고하여야”를 “공고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완납하여야”를 “완전히 납부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”을 “않거나 매매대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고지”를 “고지(告知)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환수에 관한”을 “환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,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,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<u>아니한</u> 어업자(이하 “어업자단체등”이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·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,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3조(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않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연안어업·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-----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감척에 필요한 금액의 산출명세에 관한 서류 1부	4. ----- <u>산출명세서</u> -----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받은	② -----
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5조(어선·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) ① 법 제11조제1항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·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·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,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
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
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
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
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

확인해야 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어선·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) ① -----

----- 연안어업 ·
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-----
----- 제출해야 -----.

②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
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
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
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
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와
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 또는
어선등록필증을 확인하여야 한
다. 다만, 신청인이 선박국적증
서,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
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
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서에

----- 않는 -----

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(이하 이 조에서 “폐업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,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⑥ ~ ⑧ (생략)

제7조(이의신청의 절차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

첨부하게 해야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 연안어업·구획어업 및 정
치망어업----- 제출해야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확인해야 ----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이의신청의 절차) ① ----

관에게,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8조(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(이하 이 조에서 “매입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·어구, 어선의 장비·설비 매입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,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② (생략)

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

----- 연안어업·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----- 제출해야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등을 -----

-----.

제8조(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) ① -----

----- 연안어업·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-----
----- 제출해야 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지원금(이하 이 조에서 “경영개선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5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,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9조(매입한 어선·어구의 처리 절차)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어선·어구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전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서
어선·어구를 낙찰받은 사람은
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매매계
약을 체결하고, 매매계약일부터
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
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에

연안어업 · 구
획어업 및 정치망어업
제출해야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매입한 어선·어구의 처리
절차) ① -----

----- 경쟁입찰로 -----

----- 공고해야 -----.

② _____

----- 완전히
 납부해야 -----

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
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
경우에는 낙찰이나 매매계약을
무효로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매입한 어선·어구의
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
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10조(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)

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
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
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
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
20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
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
체적으로 밝혀 환수 대상자에게
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. 이 경
우 환수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
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11조(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
신청)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
지원금 환수에 관한 납입의 고
지를 받은 자는 납입의 고지를
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

---. ----- 않거나 매
매대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은

③ -----

----- 필요한 -----
-----.

제10조(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)

① -----

----- 고지(告知)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
신청) ① -----
----- 환수 -----

신청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